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을 확대 규정하고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 징수의 정도를 상향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도모 및 청렴도 제고

3. 주요내용

-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
-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 대상 범위 신설(안 제2조제2항, 별표 1)
-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수령액 외 가산금 징수의 정도 상향
 - (현행) 부정수령액의 2배 → (개정) 부정수령액의 5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 대상 범위 확대 신설 및 여비 부정 수령 가산금 징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임.

○ 검토 결과,

-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출장이 빈번한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여비 지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금을 상향하여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